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09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통합적 생명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더불어 생명을 돌보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24년 12월까지 재계약 만료 예정으로,
- 나.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 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 예방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를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재위탁)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항 3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코로나 이후 '23년부터 자살률 증가추세(국가자살동향시스템)로 자살 관련 전문가에 의한 대학, 유관기관 등과 범사회적인 자살 네트워크 자살예방 사업 추진 필요

-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예방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가 가능
-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통계 구축과 자치구 특성 자살분석지원, 자살업무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 등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가능

라.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15층
- 시설규모 : 면적 1,625.34㎡(15층), 보증금 422,836,200원

마. 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바. 위탁사무

-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 지원
-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 자살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
-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연계, 사후관리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 그간 위탁내용

선정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
- 최초위탁 등	3년('16.3.1 ~ '19.2.28)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위탁(공모)	3년('19.3.1 ~ '21.12.31)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 재계약	3년('22.1.1 ~ '24.12.31)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4조, 제13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3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4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별도 제출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정순 (☎2133-7547)